

비장(裨將)을 두는 수령은 마땅히 신중하게 인재를 고르되, 충성되고 신실함을 첫째 기준으로 삼고 재주와 슬기를 다음으로 해야 한다.

·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防禦使)를 겸한 수령은 모두 감사와 절도사 같이 비장을 거느린다.

채제공(蔡濟恭)이 함경감사가 되었을 때 정도길(丁道吉)을 비장으로 삼았다. 6진 지방에는 가는 배를 거두는 전례가 있었는데, 배 1필이 모두 밥주발 하나에 들어갈 만큼 가는 배를 거두고 이름을 발내포(鉢內布)라 하였다. 정도길이 변방 고을에 도착하여 발내포 가져온 것을 모두 물리치며, “사또께서 다음으로 가는 배를 받아오라 하셨다”고 말하고, 거둬가려서 배를 받았다. 부중의 기생과 아전, 군교들이 모두 놀라 이를 믿지 않고, “생전에 이렇게 거친 배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끄러웠다. 채제공이 마음으로는 이를 좋게 여기면서도, 짐짓 “그대가 나쁜 배를 받아와 부중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이렇게 세상물정에 어두운가?”라고 말하였다. 정도길이 “제가 비록 세상물정에 어둡지만 어찌 발내포를 모르겠습니까? 생각건대 사또께서 비장을 보낸 것은 마땅히 이전의 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덕을 널리 퍼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부중이 모두 꾸짖는다면 청컨대 사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채제공이 손을 잡으며 “내가 비록 맹상군(孟嘗君)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대는 풍환(馮驩)보다 못하지 않구나”라고 말하고 더욱 후하게 대접하니 부중이 감히 더 말하지 못하였다.

이의준(李義駿)이 황해감사가 되었을 때 윤광우(尹光于)를 불러 비장으로 삼았다. 이때 해주감영 창고의 돈 4만 냥이 축났다. 창고 관리자가 돈 400냥을 호방과 비장에게 뇌물로 주고, 창고의 물건들을 장부와 대조

말도록 부탁했다. 방기(房妓)가 뇌물표를 보이니,  
승장(巡將)이 나오는 날에 나는 당연히 고발할 것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뇌물돈도 속히 창  
충당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물  
는데 기한이 되자 과연 축난 돈이 모두 채워졌다.

### 추천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  
르다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현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  
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수령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남구만(南九萬)이 변경지방을 자세히 조사  
하고 잘잘못을 밝히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곳 인재를 추천한 일이 그가  
임금께 올린 보고서인 장주(章奏)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이 인재를 천  
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뜻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  
의 수령이 되었다면 이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  
는 데는 나라의 통상적인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선한 사람도 덮어두

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옛법을 본떠 식년(式年)이 될 때마다 군현에서 현자를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중세 이래로 당의(黨議)가 점점 굳어져서 자기 당이 아니면 군현에서 천거한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침내 형식화되어버렸다. 그러나 현자를 덮어두는 것은 큰 죄이고 아무리 쓰여지지 않는다 해도 어찌 천거조차 않을 것인가? 오늘날 군현에서 올리는 추천장에는 으레 “없습니다”라는 말뿐이다. 먼 시골 한미한 씨족들은 벼슬의 혜택을 갖지 못하다가, 한번 천거를 거치면 그 자손들이 두고두고 칭찬할 것이다.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있을진대 어찌 없다고 보고하는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라고 할 수는 없고, 이치상 한 고을에는 훌륭한 선비가 반드시 있고 열 집밖에 안되는 마을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천거를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관내에 경서에 밝고 행실을 돈독히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 찾아가 예의를 닦아야 한다.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큰 원칙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친족을 친애하는 것이며, 둘째는 어른을 어른 대접하는 것이며, 셋째는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넷째는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하는 것이다. 서울과 근기(近畿)의 문명의 고장에서는 일일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먼 시골 지방에서는 귀한 이와 어진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평소에 친분은 없더라도 마땅히 곧 찾아볼 것이며, 명절마다

술과 고기를 계속 보내야 한다. 비록 오두막집 궁한 선비라도 학행(學行)을 스스로 닦아 명성이 온 고을에 자자한 사람이라면, 수령은 마땅히 몸소 방문하여 사립문을 빛나게 해야 하느니, 이것이 백성에게 선을 권하고 장려하는 길이다.

## 5. 물정을 살핌[察物]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것은 제왕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조리있고 총명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잘 다스리기를 회구하여 9강(綱) 54조(條)를 취하여 일마다 살피고 부지런히 힘써 실행한다면, 그 고을이 잘 다스려졌는지 잘못 다스려졌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전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고, 힘있는 백성의 횡포가 저절로 자행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은 하찮은 잘못은 그냥 덮어 두어 만물이 푸근히 안락하도록 하는 게 옳다. 그래도 여전히 아전과 향청직원, 군교들이 몰래 수령의 동정을 엿보고 이를 빙자해 멋대로 농간질하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관의 노비와 병졸들이 몰래 민간에 나가 토색질하고 행패부리는 것을 살피야 하며, 또 불효불공하고 장터에서 횡탈을 일삼는 자를 금해야 하며, 향촌에서 무단행위(武斷行爲)를 하는 자와 강한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를 통제해야 하니 별도로 염탐

하고 조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정요(政要)』의 「항통설(緡筩說)」에 이르기를, “수령의 직에 있으면서 내리는 명령이 반드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바깥사람이 바르게 간할 수 없고 간악한 아전들이 안에서 이목을 가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분분하게 일어나도 듣지를 못하게 되니, 염찰(廉察)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만약 사인(私人)을 파견하면 의혹과 비방이 또 비등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의 ‘항통의 법’이 경미한 부정도 살필 수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법이다”라고 하였다.

항통이란 자기병이나 죽통(竹筒)의 아가리를 굳게 봉하고 비벼 끈 종이 토막을 겨우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도로 꺼내지는 못하게 작은 구멍 하나만을 낸 것이다. 항통을 작은 면(面)에는 한두 개, 큰 면에는 서너 개 정도를 내보내어 모든 마을에 전해 돌리게 하되, 한 마을마다 2, 3일 정도 두었다가 거두어들인다.

수령의 정사에서 잘못된 바를 지적하면 주저없이 고칠 것이요, 민폐를 고해오면 단연코 개혁할 것이요,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하는 것도 모름지기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관리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이 있는 자는 곧바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전들이 백성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토호(土豪)가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이아무개는 무단행위를 했고, 장아무개는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여 이런 고발이 있다. 지금은 그냥 용서해줄 터이니 마땅히 조심하라”는 명령을 전한다.

만약 도적이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아무개가 이런 지목을 받고 있



관리가 행차하는 모습

으니, 만약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려거든 마땅히 멀리 자취를 감춰라”라고 명령을 전한다.

부임 초기에는 두세 차례 향통을 내보내고, 재임한 지 오래 되면 단지네 계절의 마지막 달에 한 차례씩 내보낸다.

매 계절의 첫달 초하룻날에 향교에 첩문(帖文)을 내려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고 이롭고 해로운 바를 지적하게 한다.

향교는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이전에 성균관에서는 정록청(正錄廳)에 밀봉한 통을 달아놓고 유생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정치의 득실을 논하게 했으니, 향교에 고을의 병폐를 물어보는 것은 근거가 있다.

먼저 각 면(面)의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행실이 바르고 일을 잘 아는 이가 있는지를 물어서, 면마다 4명씩 뽑아 향로(鄉老)로 삼는다.

첩문은 이를테면 이런 내용으로 내린다. “전 달 어느 날에는 양곡을 방출했고, 그 다음 달 어느 날에는 창고를 열어 세곡(稅穀)을 거두었고, 그 다음 달 어느 날에는 새로 군보(軍保)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만일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부정과 폐단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소송을 판결한 데에 잘못이 있거나, 죄를 처단한 데에 억울함이 있거나, 관청의 명령에 흠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아전과 관청의 노비들이 마을에 나가 사사로이 거두는 것이 있거나, 풍헌(風憲)과 약정(約正)이 부정한 마음을 품고 사사로이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있으면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불효불공하고 불목불화하여 풍교(風教)를 손상시키거나,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며 어른을 능멸한 자는 각기 지적해 진술하라. 만일 아전을

접내고 토호를 두려워하여 은폐하거나, 혹은 사적인 감정에서 원한을 품고 이 기회를 틈타 모함한다면 그 또한 죄를 문책할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할 만한 것은 이름을 바로 쓰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름을 쓰지 말되 모두 얇은 종으로 풀 발라 봉하고 겹봉에 도장을 찍어 향교에 제출하고, 향교는 이를 거두어 오는 초열흘에 장의(掌議)가 몸소와 수령에게 바칠 것이다.”

이는 유사(儒士)를 책문(策問)하는 법이다. 고발장을 본 날에 즉시 공개하여 말하지 말고, 잠자코 홀로 헤아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몰래 알아보아야 한다.

자제와 빈객 가운데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결백하며 실무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들로 하여금 몰래 민간을 살펴보게 한다.

일가친척과 문생(門生)이나 연고 있는 아전 가운데 단정하고 결백하며 마음이 곧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야 없겠는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사람과 미리 약속하기를 “부임해서 두어 달 지나 내가 편지할 것이니, 몰래 민간을 다니며 조목조목 살펴도록 하라”고 하고, 관아에 출입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한 장 준다.

그러고는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낸다. “북창(北倉)에서 양곡을 거두고 있는데, 내가 직접 받지 못하니 말질을 공평히 하고 땅에 떨어진 곡식을 돌려주라는 나의 지시는 과연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장삼이사(張三李四) 가운데 혹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둬들인 곡식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일이 있는가? 창고에 들고 난 뒤

에 겨를 섞어 한 섬을 두 섬으로 만드는 일이 있는가? 이때의 형상을 자세하게 그려내도록 하라.”

또, “어느 면에 이 달에 서원(書員)이 논외의 작황을 알아보러 나가는데, 장삼이사 가운데 돈을 내어 재결(災結)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가? 어떤 논배미들은 재해를 입었는데도 재감(災減)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가?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는 송아지 잡고 돼지 잡아 서원에게 향응을 베푸는 일이 있는가? 이때의 형상을 자세하게 그려내도록 하라.”

또, “어느 마을 아무개가 불효불공하다는데 사실 그러한가? 아니면 향로(鄉老)가 무고를 했는가? 아무 날에 그 아비에게 대들었고, 아무 날에 형제끼리 다투었으며, 아무개가 죽었는데 염도 하지 않았고, 아무개가 굶주렸는데 구하지도 않았는지를 반드시 직접 목격한 듯 조사해내야만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느 마을 아무개가 사람을 죽여 몰래 묻었다는데, 그 원인과 정황을 자세하게 탐지하라.”

또, “어느 시장바닥에서 아무개가 술주정을 하여 칼을 뽑아든다거나, 쌀이나 베를 빼앗는 따위의 일이 있거든 그 평소의 죄악을 낱낱이 탐지하라.”

모든 조목들은 위의 예에 준해야 한다.

무릇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결백하며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겐 마땅히 그 노고에 대해 후하게 보수를 주어야 한다. 비록 청렴하기로 이름 난 백이(伯夷)나 오릉중자(於陵仲子)라 하더라도 아무 까닭없이 힘을 들일 리는 없는 법이다.

우두머리 아전인 이방의 실권이 무거워 수령의 총명을 가려 실정이 위로 보고되지 않으니, 별도의 염문(廉問)을 그만둘 수가 없다.

현재의 이방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아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 부임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간악함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수령의 좌우가 모두 이방의 눈과 귀 역할을 하므로 은밀히 수령에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마땅히 공무를 핑계로 삼아 이 사람을 서울로 파견하고, 형제와 아들, 조카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사리를 잘 아는 이를 시켜 이 사람을 만나 “이방이 저지른 부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상세히 적어보라. 내 장차 원님에게 보고하리라”고 일러주게 한다. 또 요직에 있는 아전으로 이방과 한패 거리가 되어 부정을 하는 자들도 아울러 적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날의 앙심을 갚고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말할 터이니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창고의 농간질이라든가 마을에서의 행악이라든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한 말이 혹 모함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언로(言路)를 퇴워놓아야 할 것이다.

늘 보면 지혜롭지 못한 수령들은 이방을 사인(私人)으로 삼아 이방과 호오(好惡)를 같이하면서 그의 말만 치우쳐 듣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이방과 적대되는 자들은 마음 놓고 지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수령 스스로 자신의 총명을 막고 홀로 우뚝 고립되어, 방 밖의 일은 한 점도 듣지 못한 채 아전들은 배반하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마침내 낭패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많다.

무릇 미세한 허물과 잘못은 마땅히 그냥 보아 넘겨야 한다. 지나치게 세세히 밝히는 것은 진정한 밝음이 아니다. 가끔씩 부정을 적발하되 그 기미를 살피는 것이 귀신같아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수령이 아전들이나 향청직원들의 한두 가지 숨겨진 부정을 듣고는 마치 대단한 기회인 양 그 부정을 들춰내어 세상에 드러내놓고 떠들며 세세히 밝혀내는 밝음을 과시하는 것은 천하에 박덕한 짓이다. 큰 사건은 들춰내되 작은 일은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혹은 속짐작만 하기도 하고, 혹은 은밀히 그 사람을 불러 따듯한 말로 훈계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등 너그럽되 늘어지지 않고 엄격하되 가혹하지 않아 온후하게 덕으로 대해야 한다. 진심으로 감동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 아랫사람을 잘 거느리는 길이다. 깊은 물속에 숨은 고기를 세세히 살피고, 경솔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찌 훌륭한 수령이 할 바이겠는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믿어서는 안된다. 그냥 부질없이 하는 얘기 같아도 모두 사사로운 의도가 들어 있다.

호태초(胡太初)는 이렇게 말했다. “현령의 사람됨이 굳세어 좀체로 믿고 맡기려 하지 않으면, 아전들은 온갖 그럴 듯한 사실을 늘어놓아 은근히 현령을 추켜세운다. 그래도 현령이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현령이 업무를 마치고 쉬는 동안에 저희들끼리 무리지어 사사로이 현령에 대한 논평을 주고받아, 그 말이 슬며시 현령의 귀에 들어가게끔 한다. 그러면 아전들의 술수를 알지 못하고 현령은 그 말을 무심코 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게 된다.”

생각건대 옆에서 시중드는 아이나 기생, 노비 등이 저희들끼리 사사로이 주고받는 말을 아전들이 꾸짖으며 못하게 하는 척하지만, 실은 아전들이 흘려들여보낸 말이 많다. 간악함이 천태만상이니 어찌 유의하지 않겠는가?

미행(微行)으로는 물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체모만 손상시킬 뿐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수령은 모든 행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되니, 설령 미행을 하면 숨겨진 간악함을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한번 나갔다 하면 아침엔 이미 성 안에 소문이 왁자지껄하니, 사사로이 주고받는 말과 몰래하는 의논을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여염집 부녀자들로 하여금 길쌈하기 위해 필요한 등불만 끄게 할 뿐이다. 요새 수령들이 미행을 즐겨 하는데, 그 의도는 직접 기생집을 살펴서 몰래 사악한 짓을 하는 나이 어린 무리들을 붙잡아 자신이 밝다고 자처하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미행하는 현령을 고을 사람들은 도깨비라고 부른다.

## 6. 고과제도[考功]

아전들의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할 수 없다.

무릇 사람을 부리는 법은 오로지 '권할 권(勸)'과 '징계할 징(懲)' 두 글자에 있다. 공이 있는데 상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권할 수 없고, 죄가 있는데 벌이 없으면 백성들을 징계할 수 없다. 열심히 하도록 권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으면 모든 백성이 해이해지고 모든 일이 무너지게 되니, 모든 관리와 아전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죄에는 벌이 있지만 공에는 상이 없다. 이 때문에 아전들의 습속이 더욱 간악해지는 것이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 행할 수는 없지만 그 공과를 기록해두었다가 연말에 평가하여 상을 주면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한 장에 한 명씩 이름을 써놓은 책자를 비치해두고 모든 향청직원, 군교, 아전, 노비들의 공과를 기록한다. 과오는 범할 때마다 징치하고, 공적은 연말에 검토 비교해서 9등급으로 구분한다. 상(上)의 3등급에 든 자는 새해에 반드시 요직을 주고, 중(中)의 3등급에 든 자는 상(賞)을 논함에 차별이 있게 하며, 하(下)의 3등급에 든 자는 1년 동안 직임을 얻지 못하게 하면 어느 정도 권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년으로 임기를 정해야 한다. 수령이 먼저 오래 그 자리에 있는 후에야 실적평가를 의논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오직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

게 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미답게 해야 한다.

20년 이래 수령들이 자주 교체되어 오래 가야 2년이요, 나머지는 1년에 끝나기도 한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전과 향청직원들에 대한 항구적인 계획이 없고, 실적평가도 웃음만 살 뿐이다.

공자께서 제자의 물음에 “군사와 먹을 것은 버릴지언정 끝내 믿음은 버려선 안된다”고 대답했다. 명령을 미답게 하는 것은 백성을 대하는 첫째 임무이다. “무슨 죄를 범한 자는 무슨 벌을 받는다”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고, 또 “무슨 공을 세운 자는 무슨 상을 받게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명령을 시행하고자 해도 백성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는 큰 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나라에 외환이 있을 경우에 믿음이 아랫사람들에게 서 있지 않으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명령의 시행을 충실히 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수령의 급선무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장수는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령의 장수됨이 큰 것이니, 명령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지도할 것인가? 이것은 대의이다.

감사가 공적을 평가하는 법은 아주 소략하기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건이 모두 고르지 않은 것은 물건의 이치이다. 한 대열의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는 않을 것이니

비록 크게 악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하에 설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비록 아주 선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상에 설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당나라 마주(馬周)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했다. ‘요즘 고과에 등급을 매기는데 중상(中上)밖에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의 선비 가운데 상등과 하등의 고과에 들 자가 없음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은 대개 현재의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 상 등급에 올리자는 것이다. 또 비록 하하(下下) 등급에 들었더라도 결점을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나약하고 소루하고 어두운 잘못이지, 탐학하고 일부러 범한 죄과가 아니라면 해직만 될 뿐 후일의 재난은 없을 것이다. 어찌 내가 고의로 고과를 나쁘게 하였다고 꺼림칙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가만히 보건대 조정에서 대략 3,4년 만에 한번씩 어사를 파견하기로 되어 있으나 혹 7,8년 만에 보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령이나 향리(鄕吏)들이 모두 요행심이 생겨 부정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기를 기대하게 된다. 법을 정해서 반드시 3년에 한번 어사를 파견하자는 것이다. 자축인(子丑寅) 3년 동안의 일을 묘(卯)년에 내려와 조사하고, 묘진사(卯辰巳) 3년 동안의 일을 오(午)년에 내려와 조사하는 것을 언제나 지켜야 할 법칙으로 삼아, 당겨지고 미뤄지는 일이 없게 하면 모든 탐욕스런 관리와 교활한 아전 들이 후환이 두려워 감히 방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공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더라도 마땅히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 법이 만약 정해지면 태평의 치세(治世)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훌륭한 치세를 이룩한 것은 공적의 평가 이 한 가지 일에 있었다. 나는 이 주장이 망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